
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429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5. 3.

발의자 : 윤후덕 · 임종성 · 소병훈

윤관석 · 김영호 · 금태섭

남인순 · 박덕흠 · 안규백

이찬열 · 송옥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용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개조의 범위 및 안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그런데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신체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개조된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공간별로 사고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·공고하도록 함(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).
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 법률안
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· 제1항 및 제2항 중 “편의시설 설치기준”을 각각 “안전 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주거약자용 주택의 <u>편의시</u> 설 <u>설치기준</u>의 설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<u>편의시설 설치기준</u>을 설정·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·공고된 <u>편의시설 설치기준</u>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주거약자용 주택의 <u>안전기준</u> 및 <u>편의시설 설치기준</u>의 설정) ① ----- ----- ----<u>안전기준</u> 및 <u>편의시설 설치기준</u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안전기준</u> 및 <u>편의시설 설치기준</u>-----.</p>